

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음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6월 - 8월	4월 - 10월 1년	6월 - 1년2월 8월 - 2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 - 4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법정형의 상향(3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함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유형 2)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함¹⁾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적용범위를 축소함

-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제한함
- ‘조직적 범행’ 유형의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와의 균형상 ‘단순 가담’을 ‘조직적 범행’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함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을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연쇄적·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로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함

3.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 추가 심의

- 지난 9/9(월)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함
 -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전문위원단에서 검토를 실시함
- 이번 전체회의 심의 결과, 양형인자의 적용범위 및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차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속행하기로 함

②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 2) 유형 분류 결정, ⇨ 3) 권고 형량범위 설정, ⇨ 4) 양형인자 설정, ⇨ 5)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짐.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관한 3), 4) 및 5)에 대하여 논의(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관한 4)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였음
-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심의·확정될 예정임
 - 2024. 11. 양형위원 전체회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확정
 - 2025. 1. 양형위원 전체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수정안 확정, 각 양형기준안 의결
 - 2025. 1. ~ 2025.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

- 2025. 3. 양형위원 전체회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

■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35차 회의)**

- 일시: 2024. 11. 1.(금) 오후
- 안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

1)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따라서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됨($4년 \times 1.5 = 6년$, 법률상 가중을 하지 않은 단일 범죄 처단형에서의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전제로 함)